

문서번호	학사과-467
보존일자	영구
보고일자	2026.01.19.



기안자	학사과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권오미	박희재	강희찬	최병조	01/19 이인재	
협 조					

## 2026학년도 연간 책임시수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계획(안)

2026.01.19.



학 사 과

# 2026학년도 연간 책임시수 운영 및 초과강의로 지급계획안

## I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인천대학교 학칙」 제6조제5항
-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5조제1항
-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관리지침」 제2조제1호

## II 주요내용

### ○ 연간 책임시수 운영 개요

- 교원의 강의책임시간 연간(1년) 운영 적용(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 대상교원: 기본급을 지급하며,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는 교원

신분	직급	책임시수	비고
전임교원	교수	○	연간 운영
	부교수		
	조교수		
전임교원 외 교원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 비대상교원: 실제 강의한 시수에 대하여 시수당 강의를 지급하는 교원

신분	직급	책임시수	비고
전임교원 외 교원	강사	×	학기별운영
	겸임교원		
	명예교수		

- ▶ 예외: 학기별 책임시간 선택 전임교원 및 파견, 퇴직, 연구년,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한 학기만 강의가 가능한 전임교원

- 강의책임시간 엇학기 적용 불가

- 관련근거: 「인천대학교 학칙」 제6조제5항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⑤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임교원 학기별 최소 강의시수(6시간) 준수

- 관련근거: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관리지침」 제2조제1호

제2조(강의책임시간 감면 원칙) 강의책임시간 감면 원칙은 각호와 같다.  
1.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매학년도 통산하여 평균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연간 강의책임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별 강의책임시간은 주당 최소 6시간으로 한다.

- RISE 및 논문지도 교과목 초과강사료 미지급 시수 적용

- 학기별 책임시간 선택 전임교원이 논문지도 및 RISE 교과목을 강의한 경우, 초과강의료 산정 시 학기별로 RISE/논문지도 교과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연간책임시간이 RISE/논문지도 교과목으로 책임시수를 초과한 경우, 책임시수만 인정하되 초과강의료 산정시수에서는 제외함

### III 초과강의료 지급

○ 초과시수: 1년 강의시수의 합계\* - 1년 책임시수의 합계

\* RISE/논문지도 교과목 제외

① 초과강의료 지급: 1년 강의시수의 합계 > 1년 책임시수의 합계

② 초과강의료 반납: 1년 강의시수의 합계 < 1년 책임시수의 합계

※ 학기별 책임시간 선택 전임교원의 1년 강의시수 합계가 1년 책임시수 합계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학기 지급받은 초과강의료를 반납함

○ 초과강의료 지급시기

연간 책임시수	구분	지급일	
대상 교원	연간 책임시수 적용 교원	1학기	2학기
		<b>10월 초</b>	익월 7일
비대상 교원	학기별 책임시수 적용 교원	3~6월, 9~12월의 익월 7일	

○ 초과강의료 산출방법

- 학기 : 40,000원 x {(초과시수 x 15주) + (대단위강의 교과목 시수X비율)}

※ 15주를 4개월 분할로 지급(4주/4주/4주/3주)

※ 대단위강의 교과목은 해당 월의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200명은 1.5배, 201~300명은 2배, 301명 이상은 2.5배로 계산함

---

## IV 추진일정

---

- 2026학년도 연간책임시수 운영 안내 : 2026. 1월 중
- 전임교원 학기별 책임시수 적용 신청기간 : 2026. 1. ~ 2.
- 책임시수 관리 및 초과강의료 지급 : 2026. 3. ~

붙임 1. 관련 문서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